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7,783,247	21,833,497
일반회계	438,229,798	13,146,894
특별회계	289,553,449	8,686,603
기타특별회계	289,553,449	8,686,60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29,947	27,898
주차장특별회계	410,286	12,30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23,544	81,7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5,686,040	6,170,58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35,374	40,061
치수사업특별회계	319,113	9,5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6,763	15,20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5,642,382	2,269,271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00	6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54,931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8,656,73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